업무용 면류 및 식자재 라벨표기사항

1. 업무용 면제품을 외식업체에 납품시 봉지 라벨 표기 사항

- 외식업체 납품시 개별 제품 포장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
 - 명칭/ 첨가물/ 알레르겐표시/ 내용량/소비기한 또는 상미기간/ 보존방법/ 냉동식품에 관한 사항(필요에 따라)/ 즉석면류에 관한 사항(필요에 따라)/ 용기포장 가압가열살균식품에 관한 사항(필요에 따라)
 - * 관련법규 : 식품표시기준 제10조

2. 업무용 또는 소비자용으로 납품하는 경우 상자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

- 상자안의 개별상품에 수입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상자에 대한 표시는 별도 필요 없으나
- 상자채로 판매할 경우에는 소비자용 소매상품과 동일하게 상자에도 표시가 필요함
 - 명칭/원재료명/첨가물/알레르겐표시/내용량/소비기한 또는 상미기간/보존방법 /원산국명/식품관련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(수입자등)/ 냉동식품에 관한 사항(필요에 따라)/ 즉석면류에 관한 사항(필요에 따라)/ 용기포장 가압 가열살균식품에 관한 사항(필요에 따라)
 - 일본 국내에서 유통시킬 경우에는 수입식품도 일본 국내와 동일하게 표기가 필요함

3. 일본 소비자청 참고 사이트

○ 식품표시기준

(http://www.caa.go.jp/foods/pdf/150320_kijyun.pdf)

○ 식품표시기준 Q&A

(http://www.caa.go.jp/foods/pdf/150320_kijyun.pdf)

○ 식품표시기준에 대해

(http://www.caa.go.jp/foods/pdf/150914_tuchi-togo.pdf)